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(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)

(제정) 2006.04.10 조례 제1791호

(일부개정) 2008.07.11 조례 제1896호

(일부개정) 2010.08.13 조례 제1981호

(일부개정) 2018.03.28 조례 제2449호

(일부개정) 2019.01.30 조례 제2487호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고령, 장애,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7.11><전문개정 2010.08.13>('18.3.28. 2019.1.30.)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"보험료"란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(조전부개정2019.1.30.)

제3조(지원대상)

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지역가 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자로 한다.(조전부개정 2018.3.28. 2019.1.30.)

- 1.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 부모가족

제4조(지원시기 및 방법)

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,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 다.<제목및전문개정 2010.08.13>)

제5조(지원 대상자 선정)

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. <제목변경, 전문개정 2010.08.13>

제6조(조사실시)

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,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10.08.13>

제7조

삭제<18.3.28.>

제8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08.7.11.)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.

부칙 <조례 제1981호, 2010.08.13, 일부개정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2449호 개정 '18.3.28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2487호 2019.1.3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